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안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2025. 4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안내

2025. 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 안내 책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시행되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와 규정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항상 해당 규정 및 세칙 내용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안내

펴낸날 2025년 4월

펴낸곳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디자인 지식과감성\*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인프라선진화TF

(Email. [night.session@krx.co.kr](mailto:night.session@krx.co.kr) / Tel. 051-662-2831~4)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안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2025. 4



## 발간사

‘돈은 잠들지 않는다(Money never sleeps).’

어느 영화의 부제이기도 한 이 문장은 투자의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어디에선가는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에 변동을 줄 뉴스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 정해진 시간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로컬(local) 시간대에 맞춰진 현물시장의 종료 후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의 야간거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탄생하였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는 시장은 시차에 관계없이 투자 공백을 채워 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시장 이벤트에 제때 대응이 가능해지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발 빠르게 변화를 시도한 파생상품 거래소들은 유동성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거래시간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정보기술(IT)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거래소는 자체 야간거래 도입을 위하여 각국 사례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과정도 꼼꼼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그간의 준비를 마무리하며 한국 자본시장 최초의 자체 야간거래라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책자는 야간 거래제도, 청산결제제도, 수탁제도와 기타 시장관리제도 등 KRX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의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제도가 정규(주간)거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시와 함께 수록하여 안내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않는 KRX 파생상품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4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

이정식

## 목 차

발간사	4
-----	---

### 01 야간거래 개요

---

1.1 도입배경	8
1.2 기대효과	9
가. 거래비용의 절감	9
나. 시장운영 안정성	10
다. 리스크 관리 강화	10
라. 투자자 거래편의	10
1.3 해외거래소 야간거래 운영사례	11

### 02 야간거래 주요 제도

---

2.1 기본방향	16
2.2 거래제도	16
가. 거래시간 및 거래일	16
나. 야간거래 대상상품	18
다. 호가의 종류 및 조건 등	20
라. 호가의 가격제한	21
마. 호가의 수량제한	24
바. 거래체결	25
사. 기타사항	30

<b>2.3 청산결제제도</b>	31
가. 결제방식	31
나. 일일정산	32
다. 미결제약정 상계	32
라. 거래증거금	32
마. 거래증거금 예탁시한	35
<b>2.4 수탁제도</b>	35
가.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및 약관 교부	35
나. 수탁의 거부	39
다. 기본예탁금	40
라. 사전위탁증거금	41
마. 사후위탁증거금	42
바. 위탁증거금의 지급·총당	42
사.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44
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등 불이행시 조치	44
<b>2.5 기타 시장관리제도</b>	45
가. 대용가격 등의 적용	45
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46
다. 과다호가 접수제한	47
라. 과다호가부담금	48
마. 알고리즘거래 관련	48

## 03 부록

---

<b>3.1 KRX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변경 연혁</b>	49
<b>3.2 야간거래 대상상품 명세</b>	50

# Chapter 01

## 야간거래 개요

### 1.1 도입배경

한국거래소는 2009년부터 해외거래소(CME, Eurex)와 연계 형태로 야간거래를 제공하였습니다. 야간거래는 투자자에게 야간시간대 해외시장의 주가·환율 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수단과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CME-Eurex 연계거래]

구분	CME 연계거래	Eurex 연계거래
운영 기간	2009년~2020년 4월	2010년~2025년 6월 5일 종료예정
거래시간	한국시간 18:00~익일 05:00	한국시간 18:00~익일 05:00
거래대상 상품	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미국달러선물
거래절차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상품 거래 및 결제 (CME에서 KRX와 KRX회원에게 체결내역 통보)	Eurex에서 1일만기선물 거래 및 결제 (Eurex거래 잔고를 익일 아침 KRX로 이전)

해외거래소와 연계한 배경에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글로벌 파생거래소의 인지도 활용, 그리고 야간거래 운영 노하우 습득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그간 10년 이상 연계거래를 통한 충분한 시장운영 경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야간거래”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6월초 야간거래 도입을 목표하고 있으며 도입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계획입니다.

### **Q** 기존 Eurex 연계 야간거래는 종료되는지? 종료된다면 그 시기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자체 야간거래 도입 시 Eurex 연계 야간거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거래는 '25.6.5(목) 4:00\*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종료 시점은 야간거래 공백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거래 도입 예정인 6월초와 근접한 시기로 정했습니다.

\* 서머타임(Summer Time)이 적용됨에 따라 오전 4시까지 거래

## **1.2 기대효과**

### **가. 거래비용의 절감**

Eurex 연계거래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회원을 통해 Eurex 회원을 경유하여 Eurex에 상장된 KRX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았습니다. 반면, KRX 야간거래는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KRX 회원을 통해 바로 KRX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 측면에서 시장참여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나. 시장운영 안정성

자체 야간거래는 시장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적시에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연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국가 간 네트워크 이슈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 다. 리스크 관리 강화

KRX 야간거래 거래대상 상품(10개)은 기존 Eurex 연계거래(5개)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계거래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5개 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미국달러선물)과 함께 5개 상품(코스닥15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3·10년 국채선물)이 야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라. 투자자 거래편의

연계거래는 해외거래소의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 거래되었습니다. KRX의 제도와 시스템에 익숙하던 투자자는 연계거래의 낯선 거래환경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KRX 자체 야간거래는 KRX의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연계거래의 낯선 환경에 의한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3 해외거래소 야간거래 운영사례

파생상품시장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미국과 유럽 거래소는 주·야간 구분 없는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거래소 야간거래 현황]

구분	CME(미국)	ICE(유럽)	Eurex(유럽)
운영체계	자체 24시간 거래 운영		
도입연도	1992년	2007년	2018년
거래시간	18:00~ <sup>익일</sup> 17:00	20:00~ <sup>익일</sup> 18:00	01:00~22:30
	23시간	22시간	21시간 30분

또한, IT 기술의 진전과 시장운영 경험의 축적으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거래소도 자체 야간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거래소 야간거래 도입 현황]

구분	일본(JPX)	홍콩(HKEX)	대만(TAIFEX)	싱가포르(SGX)
운영체계	자체 야간거래 도입			
도입연도	2007년	2013년	2017년	2010년
주간거래	08:45~15:15	09:15~16:30	08:45~13:45	09:00~16:30
야간거래	16:30~ <sup>익일</sup> 06:00	17:15~ <sup>익일</sup> 03:00	15:00~ <sup>익일</sup> 05:00	17:00~ <sup>익일</sup> 05:15
거래시간	20시간	17시간	19시간	20시간 15분

Chapter  
**02**

## 야간거래 주요 제도

### [야간거래 주요 제도안]

기본 사항	거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0~<sup>익일</sup>6:00(약 12시간)</li> <li>* 호가접수 17:50~<sup>익일</sup>6:00</li> </ul>
	거래일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1일 거래(익일 정규거래와 동일)</li> </ul>
	휴장일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개시 시점</li> <li>* 거래개시 시점이 속한 날이 정규거래의 휴장일이면 야간거래를 개시하지 않음</li> </ul>
	거래대상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식파생상품(7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u>코스닥150선물</u></li> <li>- 옵션: 코스피200옵션, <u>미니코스피200옵션</u>, 코스피200위클리옵션(월·목물), <u>코스닥150옵션</u></li> </ul> </li> <li>■ <b>FICC파생상품(3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 미국달러선물, <u>3년국채선물</u>, <u>10년국채선물</u></li> <li>* 밑줄 표시: Eurex 연계거래상품(5개) 대비 야간거래에 신규로 추가되는 상품(5개)을 표시</li> </ul> </li> </ul>
매매	호가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li>*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li> </ul>
	호가의 효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li>* 효력(야간거래 시간동안 유효), 조건(IOC 및 FOK 허용)</li> </ul>
	호가의 취소·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1일 정규거래의 기준가격 적용</li> </ul>

매매	호가의 가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대비 축소된 가격제한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파생상품에 한하여 정규거래의 1단계 가격제한비율(8%) 적용</li> <li>cf. 정규거래의 가격제한: 1단계(8%), 2단계(15%), 3단계(20%)</li> </ul> </li> <li>■ 정규거래 대비 확대된 실시간가격제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 가격변동폭 적용</li> </ul> </li> </ul>
	호가의 수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대비 1/2 수준으로 축소된 호가수량한도 적용</li> <li>*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li> </ul>
	협의대량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착오주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실시간가격제한, 대량투자자 착오구제 등)</li> </ul>
	시세공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시장조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도입</li> </ul>
청산 결제	결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거래분은 T+1일 정규거래와 합산하여 결제</li> </ul>
	거래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거래 종료 후 포지션 대상으로 재산출·조정</li> <li>* 정규거래 장종료 대비 예탁필요액이 120% 또는 500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li> </ul>
	장중추가 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용(코스피지수 미산출, 수탁(위탁증거금)도 미적용)</li> </ul>
수탁 및 기타	회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파생상품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외국인통합계좌도 동일하게 적용)</li> <li>* 단, 약관 변경승인 및 위험고지서 再교부 및 교부확인서 징구 필요</li> </ul>
	기본예탁금·위탁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결제불이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ul>
	과다호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별도로 부과</li> <li>* 단, 부과기준은 정규거래와 동일</li> </ul>
	알고리즘 거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와 동일</li> <li>* 계좌등록 및 위험관리수단 제공 등</li> </ul>

[정규거래 vs. 야간거래]

		구분	정규거래	야간거래	
호가의 가격제한	가 격 제 한 비 율	<b>야간거래에 정규거래 대비 축소된 가격제한비율 적용</b> (단, FICC파생상품의 경우 정규거래와 동일한 가격제한비율 적용)			
		주식파생상품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 (종목간SP거래 5%)	8% (종목간SP거래 2.5%)	
		FICC파생상품	미국달러선물	4.5% (종목간SP거래 3%)	
			3년국채선물	1.5% (종목간SP거래 1.5%)	
	10년국채선물		2.7% (종목간SP거래 2.7%)		
	실 시 간 가 격 제 한	<b>야간거래에 정규거래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률 적용</b>			
		주식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1.0% (종목간SP거래: 1.0%)	2.0% (종목간SP거래: 2.0%)
			코스피200옵션 (위클리포함)	세척 「별표25」	세척 「별표25」×2
		FICC파생상품	미국달러선물	1.0% (종목간SP거래: 1.0%)	2.0% (종목간SP거래: 2.0%)
			3년국채선물	0.5% (종목간SP거래: 0.5%)	1.0% (종목간SP거래: 1.0%)
10년국채선물			0.9% (종목간SP거래: 0.9%)	1.8% (종목간SP거래: 1.8%)	

[정규거래 vs. 야간거래]

구분		정규거래	야간거래		
호가 수량 한도	<b>야간거래에 정규거래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어 적용</b>				
	주식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2,000 (종목간SP거래 2,000)	1,000 (종목간SP거래 1,000)	
		미니코스피200선물	10,000 (종목간SP거래 10,000)	5,000 (종목간SP거래 5,000)	
		코스닥150선물	1,000 (종목간SP거래 1,000)	500 (종목간SP거래 500)	
		코스피200옵션	2,000	1,000	
		미니코스피200옵션	10,000	5,000	
		코스피200위클리옵션	2,000	1,000	
	FICC파생상품	코스닥150옵션	1,000	500	
		미국달러선물	5,000 (종목간SP거래 10,000)	2,500 (종목간SP거래 5,000)	
		3년국채선물	1,000 (종목간SP거래 5,000)	500 (종목간SP거래 2,500)	
	누적 호가 수량 한도	10년국채선물	1,000 (종목간SP거래 2,000)	500 (종목간SP거래 1,000)	
		코스피200선물 (선물SP포함)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30,000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코스피200옵션 (위클리옵션 포함)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미니코스피 200선물 (선물SP 포함)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미니코스피 200옵션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2.1 기본방향

파생상품 자체 야간거래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정규거래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해 본 안내 책자에서는 정규거래와 야간거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2.2 거래제도

### 가. 거래시간 및 거래일

#### □ 거래시간

야간거래는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호가 접수는 그보다 10분 앞선 17시 50분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야간거래 호가접수 및 거래시간]

17:50~18:00	18:00	18:00~ <sup>익일</sup> 5:50	5:50~6:00	6:00
시가단일가 호가접수	시가단일가 결정	접속거래	종가단일가 호가접수	종가단일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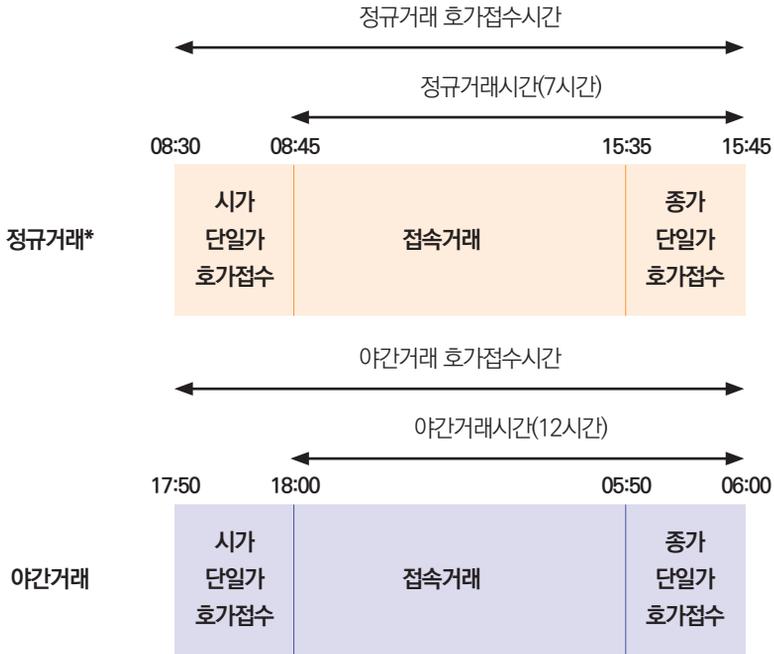
\* 야간거래 거래시간은 국내시장과 연동성이 높은 미국 및 유럽증시 거래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야간거래 개시시간이 정규거래 종료 직후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공백을 가지는 이유는 정규거래 종료 이후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등의 마감 작업과 야간거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Q 야간거래 시간을 18:00~<sup>익일</sup>06:00로 정한 이유는?

거래시간은 Eurex 연계 야간거래의 개시시각(18:00)과 미국 증시 종료시점(익일6:00)을 고려해 정하였습니다. 향후 야간거래 시간이 정규거래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및 회원사 의견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거래시간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규·야간거래 호가접수시간]



\* (예시) 코스피200선물 등 주식파생상품

## □ 거래일

야간거래의 거래일은 종료시점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오늘(T일) 18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내일(T+1일) 새벽 6시에 종료되므로 내일(T+1일) 정규거래와 함께 내일(T+1일)의 거래입니다. 이는 야간거래를 도입한 해외거래소의 사례\* 및 청산결제 주기\*\*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해외거래소의 야간거래 거래일은 익일 거래(T+1일)

\*\* 오늘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익일 정규거래와 합산하여 함께 청산결제 진행('2.3 청산결제제도' 참고)

## □ 휴장일

야간거래의 휴장일은 야간거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야간거래 개시 시점이 속한 날이 정규거래의 휴장일이면 당일 야간거래는 개시하지 않습니다.

야간거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작일이 휴일일 경우(주말, 공휴일 등) 해당 일자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일 정규거래가 휴장하더라도 오늘 정규거래가 정상적으로 개장했다면, 오늘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정상적으로 개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4일(목)은 정규거래가 개장하기에,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도 개장합니다. 다만, 8월 15일(금)은 공휴일로 정규거래가 휴장하여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도 휴장합니다. 이후 8월 16~17일(토, 일)의 경우 정규거래가 휴장하므로 야간거래 역시 휴장하며, 8월 18일(월)은 당일 정규거래가 개장하므로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도 정상적으로 개장합니다. 즉, 야간거래의 휴장일은 야간거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야간거래 휴장일 예시(2025년)]

구분	8.14(목)	8.15(금)	8.16(토)	8.17(일)	8.18(월)	
■ 정규거래	개장	휴장	휴장	휴장	개장	
■ 야간거래		개장	→휴장	→휴장	→휴장	개장

휴장일 기준을 예외로 둔 것은 Eurex 연계거래 및 해외거래소\*의 기준과 일치시켜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야간거래를 운영하는 아시아권 거래소(일본, 대만, 홍콩)도 거래일은 T+1일 거래로 구분하되 휴장일은 거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나. 야간거래 대상상품

야간거래의 대상상품은 정규거래에서 유동성이 높은 10개 상품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대상상품]

■ 주식파생상품(7개)	선물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u>코스닥150선물</u>
	옵션	코스피200옵션, <u>미니코스피200옵션</u>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월·목物), <u>코스닥150옵션</u>
■ FICC파생상품(3개)		미국달러선물, <u>3년국채선물</u> , <u>10년국채선물</u>

\* 밑줄 표시: Eurex 연계거래상품(5개) 대비 야간거래에 신규로 추가되는 상품(5개)을 표시

\*\* 중목간스프레드거래의 중목은 거래대상에 포함되나,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중목은 거래대상에서 제외

기존 Eurex 연계거래의 대상 상품(5개)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야간거래 도입 이후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대상 상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신규(월물)상장 및 최종거래일

T+1일 거래일 기준에 따라 신규월물 상장 또는 옵션행사가격 추가 설정의 경우에도 야간거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정규거래까지만 거래가 진행되며 해당 일자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에는 새로운 결제월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를 개시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코스피200선물 2025년 9월물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200선물 2025년 9월물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인 9월 11일입니다. 즉, 9월 11일(목) 정규거래까지만 거래가 진행되며, 해당 일자(9월 11일)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에는 새로운 결제월 종목(2026년 9월물)이 상장되어 거래를 개시합니다.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상장은 정규거래부터 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상품 상장의 경우 상장 직전 충분한 준비 및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 호가의 종류 및 조건 등

### □ 야간거래 호가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성 및 글로벌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호가의 종류, 조건, 취소 및 정정 등은 모두 정규거래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해외 주요거래소에서도 야간거래와 정규거래 호가 종류 동일

따라서 정규거래에서 지원하는 지정가/시장가/조건부지정가/최유리지정가 호가를 야간거래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충족조건(IOC) 및 전량충족요건(FOK)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한 호가에 대해 호가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호가 종류·가격의 정정도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 호가의 효력

정규거래와 야간거래 간 호가의 효력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제출한 호가는 해당 야간거래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야간거래 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는 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 호가의 입력방법 및 내용

호가의 입력방법과 내용도 기본적으로 기존 정규거래와 동일합니다. 이에 회원은 정규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호가 적합성을 점검하여, 기준에 부합한 호가에 한해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으로 송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이용하여 호가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라. 호가의 가격제한

### □ 호가의 기준가격

야간거래는 익일 정규거래와 동일일자 거래이기에, 호가의 가격제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익일 정규거래에 적용될 기준가격과 동일합니다.

[야간거래 기준가격]

구분	기준가격
■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당일 이론가격*
■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	● 선물: 당일 정산가격* ● 옵션: 당일 거래증거금 기준가격*

\* 야간거래 장개시 직전에 산출되는 가격(최신가격)을 의미

## □ 호가의 가격제한비율

가격제한폭은 특정 거래세션(정규 또는 야간거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가격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비율을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야간거래에서는 이러한 가격제한비율이 정규거래보다 축소 적용되어, 정규거래 대비 변동가능한 최대가격폭이 더 작습니다. 야간거래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적을 수 있어 야간시간대 가격 급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간시간대 가격 급변으로 인한 익일 주식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가격제한비율을 정규거래보다 축소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파생상품은 정규거래의 1단계 가격제한비율(8%)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스프레드 거래는 정규거래 대비 1/2 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FICC파생상품 및 이에 대한 스프레드 거래는 현물(장외)시장에 가격제한폭이 없음을 고려하여, 야간거래에서도 정규거래와 동일한 가격제한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간거래 가격제한비율]

구분	결제월 종목		종목간SP거래		비고
	정규	야간	정규	야간	
<b>■ 주식파생상품</b>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	8%	5%	2.5%	정규거래 대비 축소
<b>■ FICC파생상품</b>	미국달러선물	4.5%	3.0%		정규거래와 동일
	3년국채선물	1.5%	1.5%		
	10년국채선물	2.7%	2.7%		

## □ 실시간 가격제한

야간시간대 가격제한폭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과 달리 실시간 가격제한은 정규거래 대비 2배로 확대됩니다. 즉, 야간시간대 움직일 수 있는 최대가격범위(가격제한폭)는 축소되나 직전 체결가격 대비 신규 체결가격의 변동가능 범위는 확대됩니다.

언뜻 호가의 가격제한비율의 축소와 실시간 가격제한의 확대는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거래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적을 수 있어 직전 체결가 대비 호가제출 가능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경우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가격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시간가격제한은 야간거래 대상상품 중 8개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일부 상품의 경우 종목간 스프레드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거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률]

구분		선물·옵션거래		종목간SP거래	
		정규	야간	정규	야간
■ 주식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1.0%	2.0%	1.0%	2.0%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옵션 (위클리 포함)	세척 「별표25」*	세척 「별표25」×2	-	-
■ FICC파생상품	미국달러선물	1.0%	2.0%	1.0%	2.0%
	3년국채선물	0.5%	1.0%	0.5%	1.0%
	10년국채선물	0.9%	1.8%	0.9%	1.8%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25」에서 정하는 옵션거래의 가격변동폭

## 마. 호가의 수량제한

### □ 호가수량한도

호가수량한도란 1회의 호가당 지정할 수 있는 호가수량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야간거래의 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대규모 호가제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상품별 호가수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거래 호가수량한도]

구분		선물·옵션거래		종목간SP거래	
		정규거래	야간거래	정규거래	야간거래
■ 선물	코스피200선물	2,000	1,000	2,000	1,000
	미니코스피200선물	10,000	5,000	10,000	5,000
	코스닥150선물	1,000	500	1,000	500
	미국달러선물	5,000	2,500	10,000	5,000
	3년국채선물	1,000	500	5,000	2,500
	10년국채선물	1,000	500	2,000	1,000
■ 옵션	코스피200옵션	2,000	1,000	-	-
	미니코스피200옵션	10,000	5,000	-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2,000	1,000	-	-
	코스닥150옵션	1,000	500	-	-

## □ 누적호가수량한도

누적호가수량한도란 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야간거래의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그 외 적용되는 상품과 적용계좌 및 계산범위는 정규거래와 동일합니다.

다만,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이는 호가의 효력이 정규거래와 야간거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간거래 누적호가수량한도]

구분		누적호가수량한도	
		정규거래	야간거래
■ 코스피200선물(선물SP포함)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30,000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 미니코스피200선물(선물SP 포함) 미니코스피200옵션	알고리즘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 시 옵션은 델타 환산하며 이때 적용되는 델타는 T일 정규거래 장종료시점의 델타

## 바. 거래체결

### □ 거래 체결방법

야간거래는 정규거래와 동일한 개별경쟁거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종가 결정 또는 거래재개 시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가 적용됩니다.

## □ 협의대량거래

협의대량거래의 경우 신청시간을 제외하면 정규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야간거래 대상상품 중 정규거래에서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은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거래의 협의대량거래는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단말기를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수량 역시 정규거래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거래중단 및 재개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야간거래 역시 마찬가지이나, 야간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그 요건이 상이합니다.

우선, 파생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요건을 살펴보면 필요적 중단과 임의적 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적 중단은 시장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필요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야간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시간대에는 주가지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정규거래 중 CB 3단계 발동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종료될 경우 FICC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당일 개시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야간거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임의적 중단은 시장운영 또는 특정 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하여 중단하는 것을 가리키며 거래소 및 회원 시스템 장애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 중단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야간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거래 적용 대상 임의적 중단 사유]

구분	적용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 또는 회원 파생상품시스템 장애 발생시</li> <li>* ① 거래소 시스템: 10분 이상 호가접수·매매체결이 불가능한 경우</li> <li>② 회원 시스템: 호가입력·체결수신이 불가능한 회원들의 직전 1년간 약정수량 합계가 전체의 75% 이상인 경우</li> </ul>	○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시장에서 시스템장애가 10분 이상 발생하며 주가지수 구성종목 중 일정종목수 이상에 대한 매매거래 불가시</li> <li>* 코스피200(100종목), 코스닥150(75종목), KRX300(150종목)</li> </ul>	× 지수산출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해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등 발생시</li> </ul>	× 대상상품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스프레드거래와 관련하여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2개 종목 중 거래가 중단된 종목 발생</li> </ul>	○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육선물거래와 관련해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 중단시</li> </ul>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렉스선물거래와 관련해 대상 선물거래 중단시</li> </ul>	× 대상상품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선물거래와 관련해 KRX금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시</li> </ul>	×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TF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해 ETF 매매거래 중단·정지 등 발생시</li> </ul>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li> </ul>	○ -

\* 야간거래 적용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종목의 거래중단·거래정지가 가능하고, 거래재개시 단일거래 실시

\*\* 향후 야간거래 신상품 상장 등에 따른 야간거래 임의적 중단 사유 변경 가능

□ 착오거래 정정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착오거래는 그 원인 소재에 따라 거래소착오거래와 회원착오거래로 구분되며, 야간시간에 발생한 착오거래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거래 중 거래소착오거래는 정규거래시 발생한 거래소착오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착오의 내용에 따라 2가지 정정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이 착오거래를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기거래로 인수한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서 시가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거래소와 사후 정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결된 거래의 내용 자체를 원래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통상 착오의 내용이 거래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착오내용에 따른 상세한 정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거래 거래소착오거래 정정]**

착오내용	정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 호가의 종류, 위탁자 파생상품계좌번호 등</li> </ul>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자기 구분, 투자자 구분</li> </ul>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 회원은 자기거래로 인수 후 T+1일 정규거래 시가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하여야 하며, 해당 반대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은 거래소와 회원이 사후 정산

야간거래의 회원착오거래도 정규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은 야간시간 중에는 불가능하며 직후 정규거래의 개시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착오거래 정정 절차가 청산업무와 관련이 있어 청산시스템이 작동하는 주간시간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야간거래 회원착오거래 정정]

구분	내용
■ 신청시간	야간거래 종료 직후의 정규거래 개시시점~정규거래 종료 후 30분까지 * 단, 대량투자자 착오거래가 회원착오거래에도 해당시 회원착오거래 정정 신청은 대량투자자 착오구제 後~회원착오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17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정규거래와 동일
■ 정정방법	정규거래와 동일 * 예. 종목 수량·가격 등 착오(회원 자기거래로 인수), 투자자구분 등 착오(구분정정) 등

### □ 대량투자자 착오구제

대량투자자 착오구제제도도 야간거래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야간거래 시간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직후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거래소는 구제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구제요건은 일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착오거래구제제한폭 산출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일 기초자산의 종가를 사용하는 정규거래와 달리 직전 거래일 종가를 사용합니다.

### [야간거래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요건(모두 충족 필요)]

- 착오거래로 인한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직전약정가격 등)과의 차이 × 약정수량 × 거래승수
- 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 ① 선물거래: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 ± 착오거래구제제한폭(직전 거래일 기초자산 종가 × 구제제한비율) 이내  
② 옵션거래: 직전 기초자산가격 ± 착오거래구제제한폭(직전 거래일 기초자산 종가 × 구제제한비율)으로 산출한 이론가격 이내
-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해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 착오자가 제도를 악용하지 않으며,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성이 있을 것
- 최초 착오발생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것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은 착오거래 발생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착오거래 내용을 입력하거나 구제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정규거래와 달리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제를 신청한 회원은 소명자료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같은 거래일에 속하는 정규거래 개시 직후 구제 신청건에 대해 접수여부를 판단하고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 이내\*에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구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의 내용, 그 밖에 거래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구제 여부 결정을 1일 연장 가능

## □ 거래의 취소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복구가 곤란할 경우 거래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 기타사항

### □ 시세 등의 공표

야간거래도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종목별 시세 등의 정보를 공표합니다. 다만, 야간거래 시간동안 기초자산은 거래되지 않으므로 일부 정보성 데이터(텔타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시장조성자 제도

야간거래 대상상품은 대부분 시장 수요가 충분한 고유동성 상품이기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추이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3 청산결제제도

### 가. 결제방식

야간거래는 종료 후 개시하는 정규거래와 동일한 거래일로 본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시하는 야간거래분은 내일 정규거래분에 포함시켜 차감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야간거래 결제시한(T일 개시하는 야간거래)]

회원과 투자자간 결제	KRX와 회원간 결제	비고
T+2일 12시	T+2일 16시	T+1일 정규거래분에 포함시켜 결제(결제시한 동일)

예를 들면, 2025년 7월 22일(화) 개시하는 야간거래(거래일: 7월 23일)는 7월 23일(수) 정규거래와 함께 차감결제가 진행됩니다. 결제시한은 '회원-투자자간 결제'의 경우 24일(목) 12시, 'KRX-회원간 결제'의 경우 24일(목) 16시까지입니다.

## 나. 일일정산

일일정산 역시 야간거래분의 손익이 직후 정규거래분의 손익과 합산(차감)되어 거래소와 회원 간 수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T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분의 손익은 내일(T+1일) 정규거래분의 손익과 합산되어 내일(T+1일) 정규거래의 결제시한인 모레(T+2일) 16시까지 거래소와 회원이 수수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차금은 내일(T+1일)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정산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 T+1일 정규거래의 ① 최종약정가격 또는 ② 정산기준가격(이른가격 등)

## 다. 미결제약정 상계

야간거래 미결제약정은 정규거래와 구분 없이 계좌별로 동일 종목의 매도·매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자동으로 상계하게 됩니다.

## 라. 거래증거금

야간거래 도입과 함께 거래증거금 산출시점과 예탁시한이 변경됩니다.

우선, 정규거래 종료 후 1번 산출되던 거래증거금이 정규·야간거래 종료 후 각각 산출되도록 개편됩니다. 이를 편의상 정규 거래증거금과 야간 거래증거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래증거금 체계 개편안]

	현행 (일 1회 산출·예탁)	개편안 (일 2회 산출·1회 예탁)	비고
산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Sigma</math>계좌별 순위험증거금 (+) 신용위험거래증거금</li> <li>* 일괄산출(야간거래 없는 계좌 포함)</li> </ul>	(좌 동)	현행과 동일
산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종료 후 증권·파생시장 증가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종료 후에는 동일</li> <li>■ 야간거래 종료 후에는 정규거래 파라미터 활용</li> </ul>	현행방식 준용
산출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종료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종료 후(1회차) 및 야간거래 종료 후(2회차)</li> </ul>	2회 산출
예탁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1일 12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1일 11시</li> </ul>	조기화
예탁필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거래 종료 후 산출한 금액(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or 야간거래 종료 후 산출한 금액(b)</li> </ul>	(a) or (b)* * 요건 충족 시

야간 거래증거금은 야간시간 중 변경된 미결제약정수량을 반영하여 거래증거금 필요액을 조정해 산출된 거래증거금입니다. 이를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후 산출된 정규 거래증거금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있으면 야간 거래증거금을, 그렇지 않으면 정규 거래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이때의 유의미한 위험 증가는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규 거래증거금 대비 야간 거래증거금 증가율이 임계치(120%)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거래증거금의 증가분이 500억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유의미하게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회원에게 야간 거래증거금을 부과합니다.

[거래증거금 증가분의 임계치 및 금액 기준]

구분		금액(증가분) 기준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비율 기준	120% 이상	야간 거래증거금 적용	
	120% 미만	정규 거래증거금 적용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예를 아래 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증거금 예탁필요액 산출 예시]

구분	① 정규 거래증거금	② 야간 거래증거금	예탁필요액
Case I (② < ① × 1.2)	100억	110억	100억
Case II (② ≥ ① × 1.2)	100억	130억	130억
Case III (② < ① × 1.2, but 500억원 이상)	1조	1조 1,000억	1조 1,000억

정규 거래증거금이 100억원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 거래증거금이 120억원에 미달되면(Case I) 정규 분을, 이상이면(Case II) 야간 분만큼을 예탁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거래증거금 규모가 매우 크다면 증거금 증가율이 임계치에 미달하더라도 거래증거금 증가분이 500억원을 초과할 수 있어, 이 경우(Case III) 야간 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증거금이 결제불이행에 대한 담보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해 설계된 것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회원은 높은 정규 거래증거금이 부과되어 야간거래로 인한 증거금 증가율이 임계치에 미달해도 높은 야간 거래증거금이 산출·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 거래증거금 예탁시한

야간거래 도입에 맞춰 거래증거금의 예탁시한이 기존의 다음 거래일 12시에서 11시로 조기화됩니다.

따라서 야간거래 종료 후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새롭게 산출된 야간 거래증거금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날 산출된 정규 거래증거금을 11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야간거래 증거금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거래 종료시점부터 거래증거금 납부시한까지의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회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2.4 수탁제도

※ 본 챕터의 내용 중 약관 및 위험고지서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소관 사항이며, 본 소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25.4월 현재). 따라서 약관 개정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검토 중인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및 약관 교부

### □ 기본방향

회원은 정규거래와 동일한 파생상품 계좌를 통해 야간거래의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탁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일 계좌로 정규거래와 야간거래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야간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파생상품계좌가 없는 위탁자는 회원과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은 위탁자에게 파생상품거래약관과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교부·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교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배포되는 약관 및 위험고지서는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개정된 버전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규 위탁자가 아닌, 파생상품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라도 야간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관 변경승인 및 위험고지서 재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간거래는 기존 정규거래의 제도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른 사항이 일부 존재합니다. 기존 위탁자는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야간거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위탁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탁자라 하더라도 야간거래 참여의사가 있고, 야간거래의 변화된 제도와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위탁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변경승인 및 위험고지서 재교부 등의 절차는 기존 위탁자들의 야간거래 참여 의사와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여부를 점검하는 명시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간거래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위탁자는 기존 파생거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약관과 위험고지서 내용에 대한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 외국인 통합계좌

정규거래와 동일한 체계로 외국인 통합계좌도 야간거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거래 특성에 따라 적용시한 등에 차이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계좌설정 및 변경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부터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T일 정규거래 종료시점부터 30분 이내(T일 15:45~16:15)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3.10(월)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5.3.10(월) 16:15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미결제약정 사후배분**

미결제약정의 사후배분은 외국인 통합계좌 내 배분 최종투자자로부터 하위 최종투자자로 미결제약정을 이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의 사후배분은 T+1일 또는 T+2일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 이내(15:45~16:15)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T+2일 이내지만 T일 개시 야간거래분 중 T+1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T+1일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 이내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 이관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들은 야간거래 종료 후 개장하는 정규거래와 동일한 이관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 이관]

구분		신청시간
회원 內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통합계좌 사후배분 관리</li> <li>* 하위 최종투자자 → 다른 하위 최종투자자(배분 최종투자자 동일)</li> </ul>	정규거래 장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통합계좌로의 편입</li> <li>* 파생상품계좌 →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li> </ul>	15:45~1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투자자의 외국인 통합계좌 변경</li> <li>* 통합계좌의 일반 최종투자자 → 다른 통합계좌의 일반 최종투자자 (통합계좌가 개설된 회원은 동일)</li> </ul>	15:45~16:15
회원 間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통합계좌 간 인계</li> <li>* 통합계좌 → 통합계좌(통합계좌가 개설된 회원이 상이)</li> </ul>	15:45~16:15

## □ 약관 정비(금융투자협회 소관)

파생상품 자체 야간거래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해외 연계거래는 모두 중단됩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를 통해 약관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 약관 내용에서 CME 연계거래에 적용됐던 글로벌거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자체 야간거래를 위한 제도요건 반영과 기타 정비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위험고지서 보완(금융투자협회 소관)

야간시간대 거래에는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야간거래 시행 초기에는 정규거래 대비 유동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원치 않는 가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거래 종료 후 야간거래 준비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KRX의 판단하에 야간거래 개시 시각이 변경되는 등의 시장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간에는 기초자산 거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가격과 같은 투자 참고지표 제공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듯 야간거래에는 정규거래와 구분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험고지서에 포함하여 위탁자가 명확히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거래에 참여함을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나. 수탁의 거부

한국거래소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 회원이 수탁을 거부해야 하는 요건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야간거래에서도 적용됩니다.

### [수탁거부 요건(업무규정 §124)]

-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의 거래의 위탁
-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의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위탁
  - \* 정규거래 종료 후 추가예탁(유지증거금) 요구 발생 계좌는 총족 전까지 당일 야간거래 수탁 금지
  - \*\* 수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의 요건은 업무규정 세칙 §119①과 동일하게 운영 예정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
  - \* 단, 코스피200상품 수탁거부 요건은 세칙 「별표22」에서 별도로 정함(→ 2.5 기타 시장관리제도) 나. 미결제약정 보유 제한제도 참조)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와 관련한 아래 거래의 위탁
  - \* ①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未등록·등록말소·등록요건 미충족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위탁
  - ②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등록 당시 중요사항을 거짓 작성 또는 고의 누락
  - ③ 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 등에서 주문시스템을 반출
  - ④ 투자자보호·거래질서 안정을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원에 통보
- 주문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
- 사전위탁증거금계좌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 구분에 未부합하는 거래의 위탁
- 차익·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
- 교육·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
- 미결제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계좌 제외)로부터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헤지전용계좌 제외) 신규거래 위탁
- 투자일임계좌에서 계약한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신규거래의 위탁
- 하위 최종투자자의 매수·매도 의사표시를 직접 받은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자로부터 해당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세칙 제114조의2제1항제1호(국외에서 투자매매업 등 영업 영위)·제3호(적격기관투자자)를 미충족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외국인 통합계좌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

-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초과한 하위 최종투자자의 배분 최종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의사표시를 제출한 외국인통합계좌 개설자로부터의 해당 거래의 위탁
-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약한 예약자산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의 위탁
- 코스닥150상품, 개별주식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세칙 「별표22」를 준용해 적용한 결과 수탁을 거부해야 하는 거래의 위탁(→ 2.5 기타 시장관리제도)나, 미결제약정 보유 제한제도 참조)
- 他 회원으로부터 세칙 §114④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他 회원 주문 위탁계좌 신고)한 내용과 다른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다. 기본예탁금

현재 정규거래에서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최초로 주문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처분하고 결제시한이 지난 후 주문하는 위탁자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야간거래에서도 정규거래와 마찬가지로 회원은 위탁자의 기본예탁금 예약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기본예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체크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야간거래에 처음 참여했더라도 이미 정규거래에서 기본예탁금을 예약하고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였다면 해당 위탁자는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새롭게 거래할 경우에는 정규거래든 야간거래든 기본예탁금 납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예탁금의 예약금액 및 예약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예탁금의 예탁(업무규정 §127, 업무규정 세칙 §122)]

구분	내용
예탁금액	①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의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위해서는 2천만원 이상
예탁수단	현금, 대용증권, 외화, 외화증권

회원은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정하여야 하며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 야간시간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는?**

자체 야간거래에는 정규거래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신규 진입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사전교육(1시간)·모의거래(3시간) 제도와 기본예탁금 예치의무(1,000만원) 등이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라. 사전위탁증거금**

사전위탁증거금은 정규거래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회원은 야간거래의 위탁을 받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파생상품계좌별로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예탁받아야 합니다. 즉, 반대거래의 위탁을 제외하고는 신규 거래를 위탁받을 때마다 매번 사전위탁증거금의 충족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위탁자를 의미

사전위탁증거금의 산출대상과 방법 역시 정규거래와 동일합니다.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T일 정규거래 종료시점의 최신 가격 파라미터입니다.

## 마. 사후위탁증거금

사후위탁증거금은 야간거래 장종료 후에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정규거래 종료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산출하고 부족분이 존재할 경우 다음 거래일 10시를 기한으로 회원이 정한 시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현재 운영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T일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과 최신 가격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산출방식 역시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한 회원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위탁자가 장중 보유할 수 있는 위험노출액의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노출액이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리고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과 동일하게 사후위탁증거금 부족액이 발생했으나 예탁시한(다음 거래일 10:00)까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시한 이후부터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회원은 위탁자의 야간거래시간 위험관리 및 결제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의 제·개정이 있으면 적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 바.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위탁증거금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예탁총액과 결제시한 도래 전의 대응증권 매도액 합계를 위탁증거금액과 비교해 위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탁현금 또한 결제시한 도래 전의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값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면 지급 또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탁현금의 지급·충당액을 계산할 때 예탁현금에 가산하는 대응증권매도대금은 야간거래 장개시를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야간거래 장개시 전에는 결제일이 도래한 매도대금과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하여 예탁현금에 가산할 수 있지만, 야간거래 장개시 후에는 매도시점과 무관하게 예탁현금에 대응증권매도대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즉, T일에 T+2일 결제되는 대응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T일 정규거래 예탁현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부터는 T+1일(결제일 도래 전일)에 해당하므로 지급·충당 가능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E나 Eurex를 통한 기존 연계 야간거래에서는 야간시간대에 위탁자에게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디만, 한국거래소 자체 야간거래에서는 야간시간대에도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위탁자에게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을 지급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주요 요건)]**

구분	대응증권·외화·외화증권	현금
충당	■ $A = \text{Max}(\text{a} + \text{b} - \text{c}, 0)$	■ $\text{Min}\{\text{Max}(\text{a}' + \text{b}' - \text{c}', 0), A\}$
지급	■ $B = \text{Min}\{\text{Max}[\text{a} + \text{b} - \text{Max}(\text{c}, \text{d}^*)], \text{a}^{**}\}$ * 사전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액(기본예탁금액일 때 기본예탁금액 초과액만 지급 가능하도록 반영한 것) ** 대응증권 매도대금(⑥)으로 인해 예탁총액(③)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ap	■ $\text{Min}\{\text{Min}[\text{Max}(\text{a}' + \text{b}' - \text{c}', 0), B^*], \text{a}^{**}\}$ * 예탁현금 인출로 인해 위탁증거금액이 미충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ap ** 대응증권 매도대금(⑥)으로 인해 예탁현금(③)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ap
비고	③ 예탁총액 ⑥ 결제시한 도래 前의 대응증권매도대금 ④ 위탁증거금액 ④ 기본예탁금액	③' 예탁현금 ⑥' 결제시한 도래 前의 대응증권매도대금 * 결제일 도래·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 ④' 현금위탁증거금액

\* 지급·충당 가능액 산정 시 위탁증거금액 및 현금예탁필요액은 산출시점(장중 정종료 後)과 계좌구분(사전·사후) 별로 업무규정 제칙(§149)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주의할 점은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대용증권 매도금액이 야간거래 위탁증거금 지급·충당 가능액에 반영할 수 있더라도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탁현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예탁현금은 위탁자의 실제 현금예탁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입금되지 않은 대용증권 매도금액은 지급 가능 예탁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현재 정규거래 종료 후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해 예탁총액 등\*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거나, 예탁현금 등\*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사후위탁증거금액 이상을 다음 거래일 12시까지 추가 예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야간거래 도입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예탁총액(예탁현금) + 결제시한 도래 전 대용증권 매도대금

추가 예탁 발생 계좌는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시점부터 추가 예탁 시점까지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유지위탁증거금 충족 여부는 정규거래 종료 후 산출되므로, 추가 예탁이 발생한 계좌는 해당 일자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부터 수탁이 거부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거래 장종료 후에는 별도 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하지 않으며, 야간시간대엔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예탁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업무규정 제137조의2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의미

## 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등 불이행시 조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불이행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대거래 또는 예탁자산의 처분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에게 부족액의 납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간대 반대거래에 대해 사전에 여러 회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 회원은 유동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시간에 반대거래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Eurex 연계 야간거래에도 반대거래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반대거래 호가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회원들의 야간시간대 반대거래 의사가 없음을 반영하여,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반대거래는 야간시간이 아닌 정규거래 시간에만 회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2.5 기타 시장관리제도

### 가. 대용가격 등의 적용

대용증권, 외화, 외화증권의 대용가격은 야간거래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의 가격을 반영”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용증권의 경우 대용가격(현물·채권 종목정보)의 송신시각을 감안하여 최신가격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 리스크 관리의 주체인 회원이 자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외화·외화증권의 경우 거래소가 정규거래 종료 후 송신\*하는 최신 외화 평가가격과 외화증권의 대응가격을 적용합니다.

\* 외화(외화평가가격): 16:00 전후 송신 / 외화증권(외화증권대용가): 15:30 전후 송신

[대용증권 대응가격 산출체계(개요)]

구분	산출 및 적용	기준시세	사정비율
주식·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거래일 산출</li> <li>* 야간거래에는 최신가격 적용(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일 다음거래일의 기준가격</li> <li>* 산출일의 증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수익률 등급구간별로 사정비율 결정(60~80%)</li> <li>* 매분기말 산출해 다음분기 적용</li> </ul>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거래일 산출</li> <li>* 야간거래에는 최신가격 적용(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일을 포함한 5거래일 증가의 산술평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자·신용평가등급·잔존만기 등급구간별로 사정비율 결정</li> <li>* 매거래일 산출해 다음거래일 적용</li> </ul>
ETF·E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거래일 산출</li> <li>* 야간거래에는 최신가격 적용(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일 다음거래일의 기준가격</li> <li>* 산출일의 증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주식군: 주식과 동일한 체계(단, 파생형 ETF·ETN은 10%p 차감)</li> <li>* 매분기말 산출해 다음분기 적용</li> <li>②국채·특수채·회사채군: 채권과 동일한 체계</li> <li>* 매거래일 산출해 다음거래일 적용</li> </ul>

\* 대용증권으로 주로 이용되는 증권 위주 기재

## 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야간거래 대상상품 중 코스피200상품과 코스닥150상품은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야간거래에 대해 별도 보유한도를 정하진 않고, 해당 상품의 야간 미결제약정을 정규거래 미결제약정과 합산하여 기존 보유한도 내에 관리하게 됩니다. 코스피200상품 및 코스닥150상품 각 2만 계약의 보유한도가 적용되며 개인투자자는 그보다 작은 1만 계약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보유한도 위반 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미결제약정과 옵션 델타를 활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거래에서는 장중·장종료 델타가 별도 송신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 델타를 사용하여 실시간 보유수량을 산출해 보유한도 위반여부를 예방·관리하게 됩니다.

\* 옵션 미결제약정은 델타환산수량(델타를 이용해 선물로 환산한 수량)을 산출하고 선물 미결제약정과 합산하여 보유한도 위반여부 판단

평일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에 보유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에서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는 주문을 수탁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거래 시간에 차익·헤지거래분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였고 해당 수량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예정인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하에 야간거래 시 주문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거래일 전일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에 다음 거래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의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차익·헤지분 예외 없이 야간거래에서 해당 종목의 미결제약정 증가주문을 수탁 거부합니다.

## **다. 과다호가 접수제한**

과다호가 접수제한은 정규거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라. 과다호가부담금

과다호가에 대한 부담금은 정규거래와 별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즉, 야간거래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과 부담금 산출은 정규거래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대상상품, 계산단위, 부과기준 등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요건]

구분	내용
대상상품	① 코스피200선물(SP포함)·옵션 ② 미니코스피200선물(SP포함)·옵션
계산단위	① 파생상품계좌별 ② 고속알고리즘거래번호별
부과기준 (① or ②)	① 총호가건수 20만건(미니상품은 50만건) 이상이면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15 이상 ② 일괄호가취소 신청건수 50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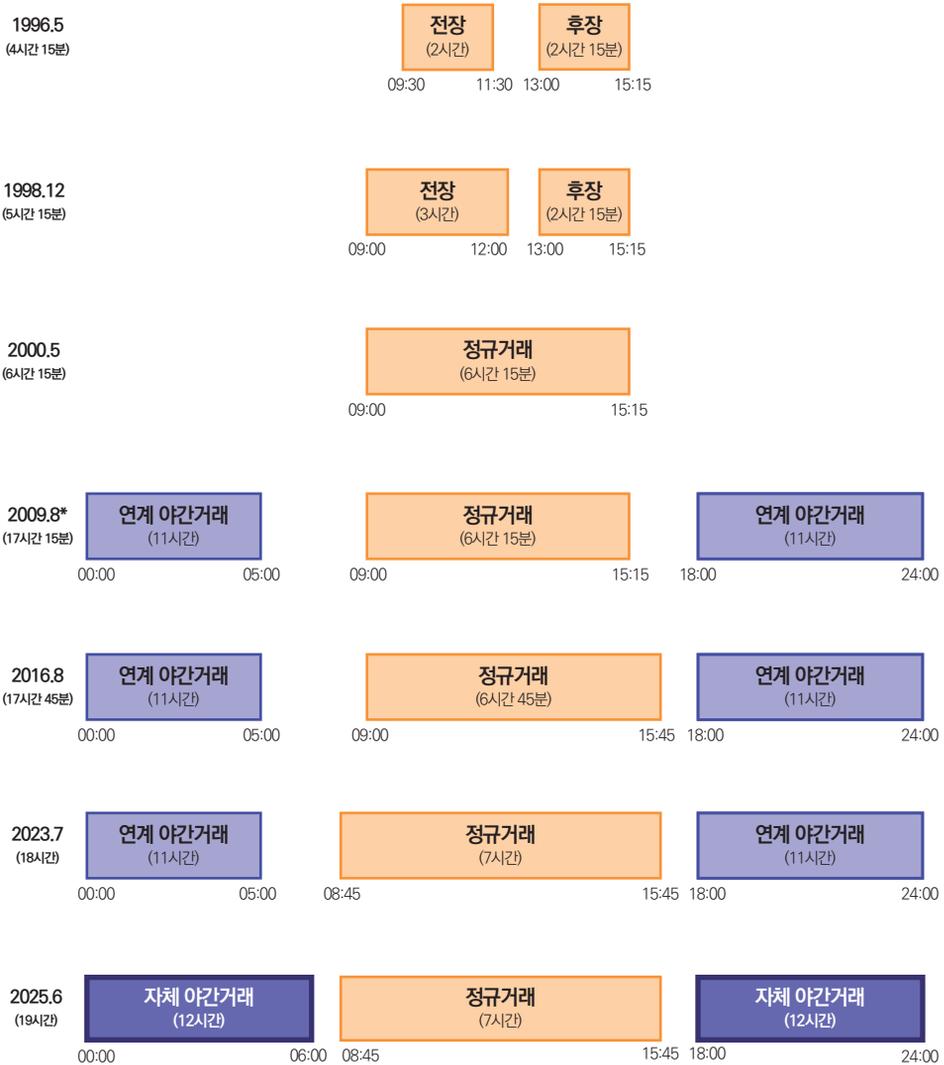
## 마. 알고리즘거래 관련

알고리즘거래의 관리체계는 정규거래와 동일합니다. 또한, 정규거래의 알고리즘거래계좌와 고속알고리즘거래자ID를 야간거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회원의 신청에 따라 미체결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는 Kill Switch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며, 등록된 고속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대량호가취소(MOC), 자전거래방지(SMP) 등 위험관리장치가 제공됩니다.

# Chapter 03

## 부록

### 3.1 KRX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변경 연혁



\* (CME 연계거래) 2009년 11월 ~ 2020년 4월 / (Eurex 연계거래) 2010년 8월 ~ 2025년 6월

## 3.2 야간거래 대상상품 명세

### ① 코스피200선물

기초자산	코스피200지수
거래단위	코스피200선물가격×25만(거래승수)
결제월	3, 6, 9, 12월
상장결제월	3년 이내 7개 결제월(3, 9월: 각 1개, 6월: 2개, 12월: 3개)
가격의 표시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호가가격단위	0.05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12,500원(25만원×0.05)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 ② 미니코스피200선물

기초자산	코스피200지수
거래단위	미니코스피200선물가격×5만(거래승수)
결제월	매월
상장결제월	연속 6개월(분기월 2개, 비분기월 4개)
가격의 표시	미니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호가가격단위	0.02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원(5만원×0.02)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 ③ 코스닥150선물

기초자산	코스닥150지수
거래단위	코스닥150선물 가격×1만(거래승수)
결제월	3, 6, 9, 12월
상장결제월	3년 이내 7개 결제월(3, 9월: 각 1개, 6월: 2개, 12월: 3개)
가격의 표시	코스닥150선물 수치(포인트)
호가가격단위	0.10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원(1만×0.1p)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 ④ 코스피200옵션

기초자산	코스피200지수
거래단위	코스피200옵션가격×25만(거래승수)
결제월	매월
상장결제월	비분기월 4개 및 분기월 7개(3, 9월: 각 1개, 6월 2개, 12월 3개)
가격의 표시	프리미엄(포인트)
호가가격단위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 0.01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0.05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 2,500원(25만×0.01 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12,500원(25만×0.05 포인트)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⑤ 코스피200위클리옵션

기초자산	코스피200지수
거래단위	코스피200옵션가격×25만(거래승수)
결제주	매주
상장결제종목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각각 다음주 월요일, 목요일 만기옵션 상장 (결제월거래와 만기가 동일한 경우 결제주거래 미상장)
가격의 표시	프리미엄(포인트)
호가가격단위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 0.01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0.05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 2,500원(25만×0.01 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12,500원(25만×0.05 포인트)
최종거래일	월요일만기 상품의 경우: 매주 월요일(휴장일인 경우顺延함) 목요일만기 상품의 경우: 두 번째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⑥ 미니코스피200옵션

기초자산	코스피200지수
거래단위	미니코스피200옵션가격×5만(거래승수)
결제월	매월
상장결제월	연속 6개월(분기월 2개, 비분기월 4개)
가격의 표시	프리미엄(포인트)
호가가격단위	프리미엄 3 포인트 미만: 0.01 포인트 프리미엄 3 포인트 이상 ~ 10 포인트 미만: 0.02 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0.05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프리미엄 3 포인트 미만: 500원(5만×0.01 포인트) 프리미엄 3 포인트 이상 ~ 10 포인트 미만: 1,000원(5만×0.02 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2,500원(5만×0.05 포인트)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⑦ 코스닥150옵션

기초자산	코스닥150지수
거래단위	코스닥150선물 가격×1만(거래승수)
결제월	매월
상장결제월	비분기월 2개 및 분기월(3, 6, 9, 12) 4개
가격의 표시	프리미엄(포인트)
호가가격단위	프리미엄 50포인트 미만: 0.1포인트 프리미엄 50포인트 이상: 0.5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프리미엄 50포인트 미만: 1,000원(1만×0.1포인트) 프리미엄 50포인트 이상: 5,000원(1만×0.5포인트)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⑧ 3년국채선물

기초자산	3년만기 국고채
거래단위	액면 1억원
결제월	3, 6, 9, 12월
상장결제월	6월 이내의 2개 결제월
가격의 표시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호가가격단위	0.01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0원(1억원×0.01p×(1/10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⑨ 10년국채선물

기초자산	10년만기 국고채
거래단위	액면 1억원
결제월	3, 6, 9, 12월
상장결제월	6월 이내의 2개 결제월
가격의 표시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호가가격단위	0.01 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0원(1억원×0.01p×(1/10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결제방법	현금결제

⑩ 미국달러선물

기초자산	미국달러(USD)
거래단위	US \$10,000
결제월	분기월 중 12개, 비분기월 중 8개
상장결제월	총 20개(1년이내 매월, 1년초과 매분기월 상장)
가격의 표시	US \$1 당 원화
호가가격단위	0.10원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원(US \$10,000×0.10원)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로부터 가산하여 3일째 거래일
결제방법	인수도결제







| COPYRIGHTS © 2025.KRX.All rights Reserved. | [www.krx.co.kr](http://www.krx.co.kr) |